

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1955호
- 발 의 자 : 이성희 의원 외 찬성의원 15명
- 발의일자 : 2017년 8월 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0일

2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시장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환류(feed-back) 절차를 필수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- 참고사항 :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안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계획 수립·추진 시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환류 절차를 필수화하여 계획 수립과 추진의 체계성,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재 「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,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, 등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, 수립된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.
- 따라서 동 조례에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.

<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1.~3. (생략)	제3조 (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② <u>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

나. 종합검토의견

- 국제회의산업¹⁾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 그 시장규모가 크고 호텔, 교통, 관광 등 연관산업 발전에의 기여도가 크며,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.
- 해마다 국가별,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통계를 조사 발표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(UIA,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)의 발표(A+B 기준)에 따르면 서울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회의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며 국제적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.
-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함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국회에서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²⁾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1) 이전에는 함께 모인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Conven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제회의와 전 시, 그로부터 파생되는 상거래, 관광활동 등을 통칭하여 컨벤션산업이라 불렀고, 200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Meeting, Incentive travel, Convention,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MICE산업으로 통칭하며 정책적으로 육성하였고, 이러한 정책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MICE 개념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.

2) 2017.5.31. 민경욱 의원 등 10인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발의

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주요내용

제6조(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)

- ① (생략)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(생략)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(생략)